

정보통신망 운영·관리 지침

제정 2012. 8. 1.

개정 2017. 11. 1.

개정 2022. 7. 1.

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부산대학교 교내 정보통신망(이하 “전산망”이라 한다)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 정의)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전산망”이란 복수의 컴퓨터와 단말장치를 정보통신회선망과 공통규약에 의하여 상호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개념을 말한다.
- ② “포트”란 다른 장치에 접속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위치를 말한다.
- ③ “LAN선”이란 통신장비 또는 컴퓨터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선을 말한다.
- ④ “통신장비”란 전산망 구성을 위한 통신접속 장비를 말한다. 라우터, 스위치, 허브 등이 있다.
- ⑤ “건물 내 전산망 장비실”이란 통신장비 및 분배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말한다.
- ⑥ “도메인(Domain)”이란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쉽게 영문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.
- ⑦ “무선중계기(AP)”란 무선랜을 통하여 유선망에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범위) ① 전산망은 부산캠퍼스 및 각 지역캠퍼스에 위치한 본부, 대학 및 대학원, 부속·지원시설, 연구소 등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제2조에 정의된 ‘건물 내 전산망 장비실’을 확보하고 정보화본부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

- ② 제1항을 제외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화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본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전산망에 연결할 수 있다.(건물 내 전산망 장비실)
- ③ 전산망 장비보호 및 전산망 보안을 위하여 잠금 장치가 구비되고 통풍 및 환기되는 독립 공간과 안전한 전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설치된 시설물은 이전, 철거할 수 없으며, 설치 장소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구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시설물 이전, 철거를 추진하되 정보화본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전산망 포트 지원) ① 교수연구실은 연구용 랜선 2포트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교수연구실에서 추가 포트설치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본부(이하 “본부”이라고

한다)와 협의할 수 있다.

③ 포트 신청은 [서식 1] ‘Lan Port 신청서’ 를 작성 후 전자문서(공문)를 통하여 신청한다.(단, 전산망이 설치된 방에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기존의 네트워크 포트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, 증설되는 구분 공간(실험실, 연구실 등)인 경우 네트워크 포트도 공사에 포함하여야 한다.)

④ 벽면 공사를 포함하여 실내에 신규로 UTP 패치코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포트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무선랜 지원) ① 공공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학내 자체 무선랜 장비를 지원하며, 통합인증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증 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 구분별 사용 가능 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.

구분	사용 가능 상태
교직원 (시간강사 제외)	재직, 휴직
시간강사	강의 시작 ~ 강의 종료
학생	재학, 휴학, 교환학생, 등록금 수납이 완료된 수료후 연구생 및 타대생, 사용 승인된 졸업생

③ 사용자가 직접 무선중계기(AP)를 사용할 때는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증이 가능한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무선중계기(AP) 설치 시 주변의 무선중계기(AP)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채널을 조정하여 설치한다.

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사시 무선랜 사용은 임시 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다.(단, 교내 기관 또는 주최 측에서 공문으로 사용목적, 사용기간, 이용자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.)

제6조(신·증축 건물의 통신시설 및 장비) ① 신·증축 건물의 교내전산망 시설부분은 담당기관에서, 교내전산망 장비부분은 본부에서 각각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신·증축 건물이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된 공사이거나 기부채납 건물인 경우에는 모든 장비와 광 및 UTP 패치코드까지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
③ 건물 설계 시 담당기관은 LAN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본부와 협의하여 설계한다.

④ 모든 신·증축 건물의 시설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시설이 포함되어 시공되어야 한다.

1. 광케이블은 Single-Mode 광케이블 24Core 이상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상위 접속지

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부와 사전 협의한다.

2. 건물 내의 모든 실에 UTP케이블 2회선 이상(2구 Outlet 포함) 설치한다. UTP 케이블은 CAT.6 이상으로 하며, 그 길이는 75m를 초과할 수 없으며, 75m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에는 본부와 협의하여 Single-Mode 광케이블을 포설한다.
3. Rack은 FDF, Patch Panel, 장비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. Rack 전원은 단독으로 설치하며 UPS전원 활용을 권장한다.
4. 장비실은 통풍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5. 준공 시 케이블(광, UTP) 도면과 시험성적서, 선번장에 대하여 서류 및 파일로 각 1부씩 본부에 제출하고, 본부와 협의하여 Patch Panel, Outlet, 패치코드에 라벨을 부착한다.
6. 사무실 내 사용자케이블(Outlet↔PC)은 본부에서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자체 구입 장비의 유지관리) ① 기관은 다음의 경우 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자체 예산으로 전산망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전산망 사업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단위 기관의 전산망 요구 시기에 공급해 줄 수 없는 경우
 2. 전산망 장비 제공 기준 보다 상위 사양으로 기관 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위 기관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
- ② 자체 구입한 전산망 설비의 경우, 전산망 전체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끝난 뒤 해당 장비를 본부로 관리 이전할 수 있으며, 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 관리이전 시에는 본부에 사전 통보하여 차기년도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(단, 관리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독자적으로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)

제8조(IP주소 관리) ① 부산대학교의 IP주소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.

1. IP주소는 교내전산망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및 프린터 등을 대상으로 부여 한다.
 2. IP주소 할당은 책임자(담당교수 또는 부서 책임자)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 3. 1회선에 1개의 IP주소를 할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추가 신청 시 본부와 협의 하여야 한다.
 4. IP주소는 [서식 2] ‘IP Address 신청서’ 를 작성 후 전자문서(공문 또는 메일)를 통해서 신청한다.
- ② 6개월간 미사용 IP주소는 부산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2주 이상 공지한 후 사용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있다.
- ③ 본부에서는 전산망 유지관리를 위해 IP 및 단말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

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
④ 할당된 IP주소에 대한 민원 및 보안사고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는 IP주소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9조(도메인명 관리) ① 학교 도메인 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교내전산망에 연동(학교 IP)된 호스트이며 정보서비스를 지원 하는 시스템의 경우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2. 도메인 명은 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.

3. <삭제, 2022. 7. 1.>

4. 외부 IP에 대해서는 학교 도메인(pusan.ac.kr)을 연동 할 수 없다.

(단, 학교 공용 서비스의 공공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한 외부IP 연동은 예외로 한다.)

5. 접수된 도메인은 담당자 검토 후 7일내 처리한다.

② 미사용 등으로 인해 자동 반납된 IP주소와 연계된 도메인명, 메일서버, 네임서버는 IP주소 반납처리 시 자동 반납된다.

③ 부산대학교 도메인명을 이용하는 서버는 정보보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메인명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.

1. 음란사이트 운영

2. 상업적 용도의 사이트 운영

3. 지적소유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미이행

4.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 게재

제10조(네트워크 관리) ① 네트워크는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·연구·행정 활동에 우선 이용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원한다.

② 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무단 IP주소 사용자 및 영리목적 사용자는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.

2. 트래픽 관리, 이상유·무 진단, 장애 예방 및 감지를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
3.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회선 이용을 점유하거나 장애 트래픽, 보안사고 관련 트래픽 등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정 그룹 및 이용자에 대해 개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, 다수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네트워크 사용을 조절 할 수 있다.

4. 제3호의 경우로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정보보안 사고 장비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, 추가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장비를 사전 통보 없이 차단 할 수 있다.

5. 보안사고 및 유해트래픽 등을 발생시키는 IP주소로 확인된 경우 사고 해결 및

추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해서 네트워크 재접속을 허용한다.

6.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대다수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차단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공지 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.

7. 게임 및 증권 사이트 등 학술·연구에 부적합한 사이트는 공지 후 사용을 차단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서식 1】

Lan Port 신청서

소속 :

전화 :

작성자(관리책임자) :

작성일자 :

건 물 명	호 실	실 명	소속 인원수	신청 포트수	기설치포트수			신청 포트실 전화번호	비 고
					IP 주 소	Lan Card 어댑터주소	시스템기종		

* 작성요령

1. 호실,호실명은 Lan Port공사 후 IP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히 기입한다.
2. 기 설 치 포 트수 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PC의 IP와 어댑터 주소를 기입한다.
3. 사용 PC Lan Card 어댑터 주소는 교내전산망 관리와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입한다.
 - 가. 어댑터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“명령 프롬프트”에서 O/S가 windows인 경우 ipconfig/all 입력 후 엔터하면 나타난다.
 - 나. Unix System인 경우 Prompt 상태에서 ifconfig -a를 입력 후 엔터하면 나타난다.

【서식 2】

IP Address 신청서

소속 :

전화 :

작성자(관리책임자) :

작성일자 :

건 물 명	호실	실 명	소속 인원수	IP 신청수	IP 및 시스템 현황(신청하는 것도 포함)			신청 호실 전화번호	비 고
					IP 주 소 (신청하는 것은 공란)	Lan Card 어댑터주소	시스템기종		

* 작성요령

- 호실, 호실명은 Lan Port공사 후 IP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정확히 기입한다.
- IP 및 시스템 현황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PC의 IP(신청하는 것은 공란)와 어댑터 주소를 모두 기입한다.
- 사용 PC Lan Card 어댑터 주소는 교내전산망 관리와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입한다.
 - 가. 어댑터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“도스창”에서 O/S가 windows인 경우 ipconfig/all 입력 후 엔터하면 나타난다.
 - 나. Unix System인 경우 Prompt 상태에서 ifconfig -a를 입력 후 엔터하면 나타난다.